



이민자 환자의 의료 접근에 관한 의료기관 지침

2025년 8월

뉴욕주의 의료 제공자 또는 환자로서, 연방 이민 정책이 의료기관의 진료 제공이나 환자의 의료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의 행정명령들은 이민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9일자 행정명령 14218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nding-taxpayer-subsidization-of-open-borders>).

뉴욕법:

- »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합니다.
- »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귀하가 의료 제공자이든 환자이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까?

아니요.

뉴욕주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 의료보험 등 특정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이민 신분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신청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의료 제공자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민 또는 시민권 관련 정보만 수집 및 보관해야 합니다. 환자 정보의 수집 및 공개에 관한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의료 제공자는 환자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해야 합니까?

의료 제공자가 보유한 모든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는,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를 포함하여 연방 및 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의료 제공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 환자의 이민, 비자 또는 거주 신분과 관계없이 PHI를 보호해야 합니다.
- » 특정 제한적 상황을 제외하고, PHI를 ICE를 포함하여 법집행기관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PHI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연방 및 주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기관의 내부 정책 및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법집행기관이 법원 명령, 영장, 소환장 또는 소환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환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관 차원에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도, 의료 기록 및 청구서에는 환자의 이민 신분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이민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할 수 있습니까?

네.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자료를 배포하거나 교육 세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사용할 때는 재정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법률 상담을 직접 제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료기관은 ICE 대응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법집행기관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ICE 또는 기타 연방기관의 이민 단속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 민감한 서면 정보가 공용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 해당 정보와 관련된 대화가 외부에 쉽게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에 설명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십시오.

- » 뉴욕 헬스케어 헬프라인 1-800-428-9071으로 전화
- »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온라인 신고(<https://ag.ny.gov/file-complaint/health-care>).

추가 정보는 뉴욕주 주지사실 및 법무장관실 공동 민간 및 비영리 단체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https://ag.ny.gov/resources/individuals/immigrants-rights/private-non-profit-organization-guidance>).